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3. 1.

(주)인비전커뮤니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인비전커뮤니티
대표자	반대걸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SLR클럽(www.slrclub.com)/약 9.6만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7.6억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반대걸 대표이사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2022. 01.)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을 받게 되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3)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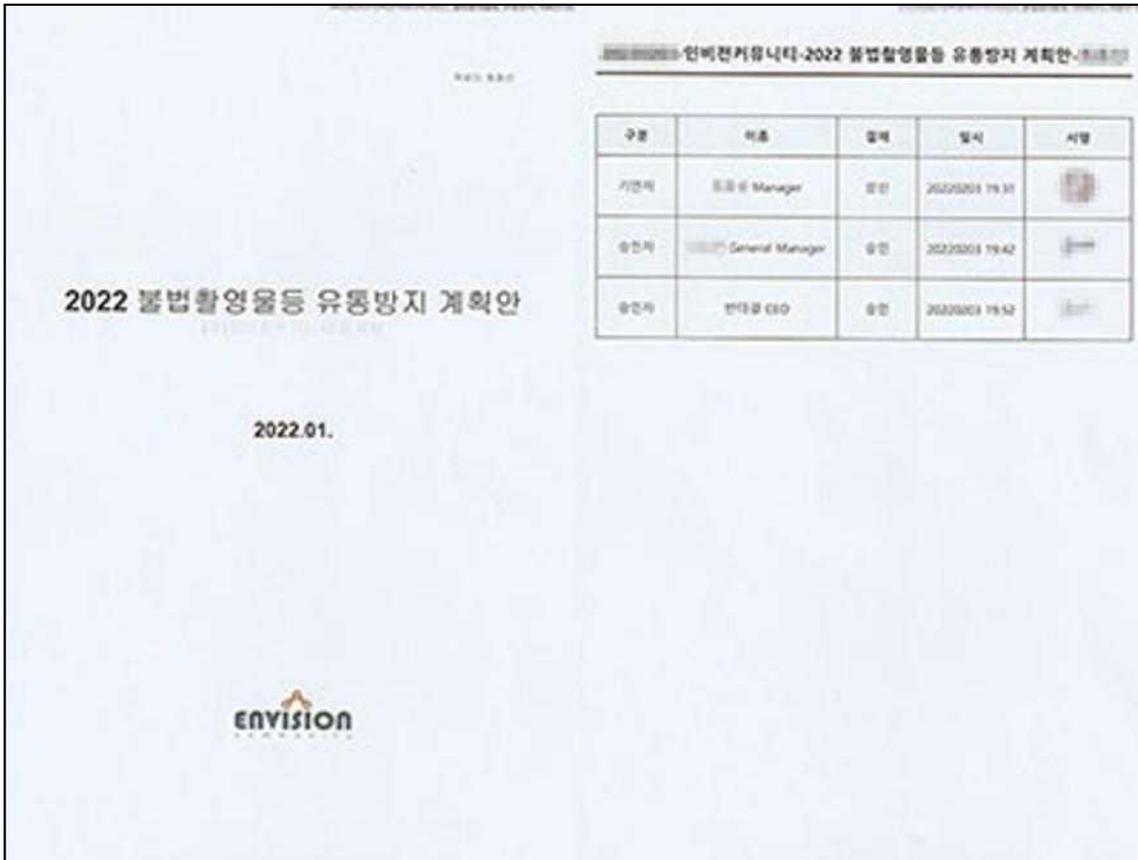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을 받으면 그 처리결과를 신고·삭제요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p.5)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 불법촬영물등 강화 조치에 대한 안내 공지, 불법촬영물등 관련 문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p.5)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http://www.slrclub.com/service/support/blockvid_request.php

· PC

The screenshot shows the SLRCLU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for COMMUNITY, FORUM, GALLERY, INFORMATION, MARKET, SLR MALL, and EVENT.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three main content cards:

- 이용문의** (Usage Inquiry): A card with a question mark icon and text: "SLR 고객센터로 문의한 내용이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This is a space where content inquired about at the SLR customer center is displayed).
- 제안사항** (Suggestions): A card with a speech bubble icon and text: "SLRCLUB에 제안한 내용이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This is a space where content suggested to SLRCLUB is displayed).
- 신고센터** (Report Center): A card with a red alarm bell icon and text: "유해 게시물, 서비스 장애, 개인정보유출 사례의 발견 또는 게시물 저작권리를 침해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주세요." (Please report if you discover harmful posts, service outages, or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r if you find copyright infringement on posts). Below this text, there are three links: "게시물신고" (Report Post), "서비스신고" (Report Service), and "불법촬영물등 신고" (Report Illegal Recording Materials, etc.), with the last one highlighted in a red box.

Below these cards, there are three columns of information:

- 자주찾는 도움말** (Frequently Asked Questions): A list of common user questions such as "레벨 좀 올려주세요 or 권한좀 시켜주세요" (Please raise my level or give me permissions) and "SLR에 무엇인가있?" (Is there anything in SLR?).
- 운영노트** (Operational Notes): A list of notices regarding SLRCLUB's data backup and service improvements, such as "SLR클럽 스토리지 서버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Service usage affected by SLRCLUB storage server work).
- 공지사항** (Notice): A list of important announcements, including "SLR클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 (SLRCLUB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Change Notice) and "SLR클럽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 조치" (SLRCLUB's strengthened measure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cording material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footer with the text: "SLRCLUB 고객센터" (SLRCLUB Customer Center), "공일 10:30 - 13:00 / 14:00 - 18:00" (Business hours), and the email address "help@slrclub.com".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1. SNS플랫폼 게시된 게시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SNS플랫폼 회원은 게시물 관리요청 또는 이용문의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범죄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이체의 할칙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하신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의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요청 진행사항은 메일로 통보되므로 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사용법

신고·삭제 요청인 정보

성명(가명·단체명) 대리 요청 * **최소권 제한** 신청 중 사본을 증명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가명·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메일) * 신청사항이 메일로 발송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표시번호는 필수사항이나 반드시 기재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청을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위임 내용, 위임인 및 수임인 정보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스캔한 뒤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삭제 요청 사유

- * 불법 촬영물 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길, URL 기재가 어려운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 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URL과 캡처본은 여러 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10개까지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업로드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역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작성지(ID, 닉네임)

게시물 제목

게시물 URL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불법촬영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와 동행이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요청 사유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허위영상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 영상물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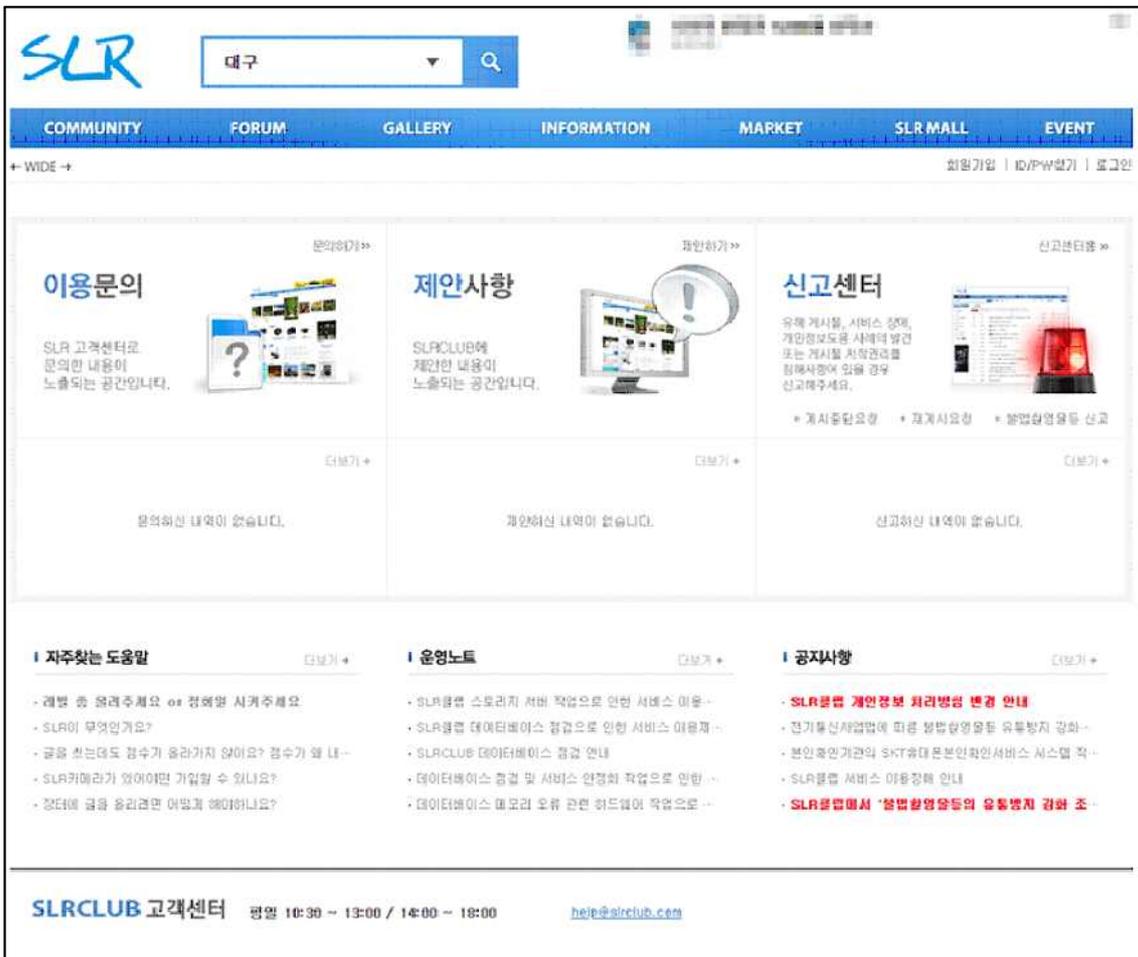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발음·비디오를 거침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물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SLR클럽 고객센터 운영

· <http://www.slrclub.com/service/support/>, help@slrclub.com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민원

SLR클럽은 불법촬영물등 위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게시물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정보가 게시되거나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또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아래의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시물 처리 담당부서

부서 : 운영팀
전화 : 0505-757-2532
메일 : help@slrclub.com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담당자

이름 : 권효진 (운영팀 매니저)
전화 : 0505-757-2532
메일 : hjkwon@slrclub.com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이름 : 반대걸 (대표이사)
전화 : 0505-757-2532
메일 : help@slrclub.com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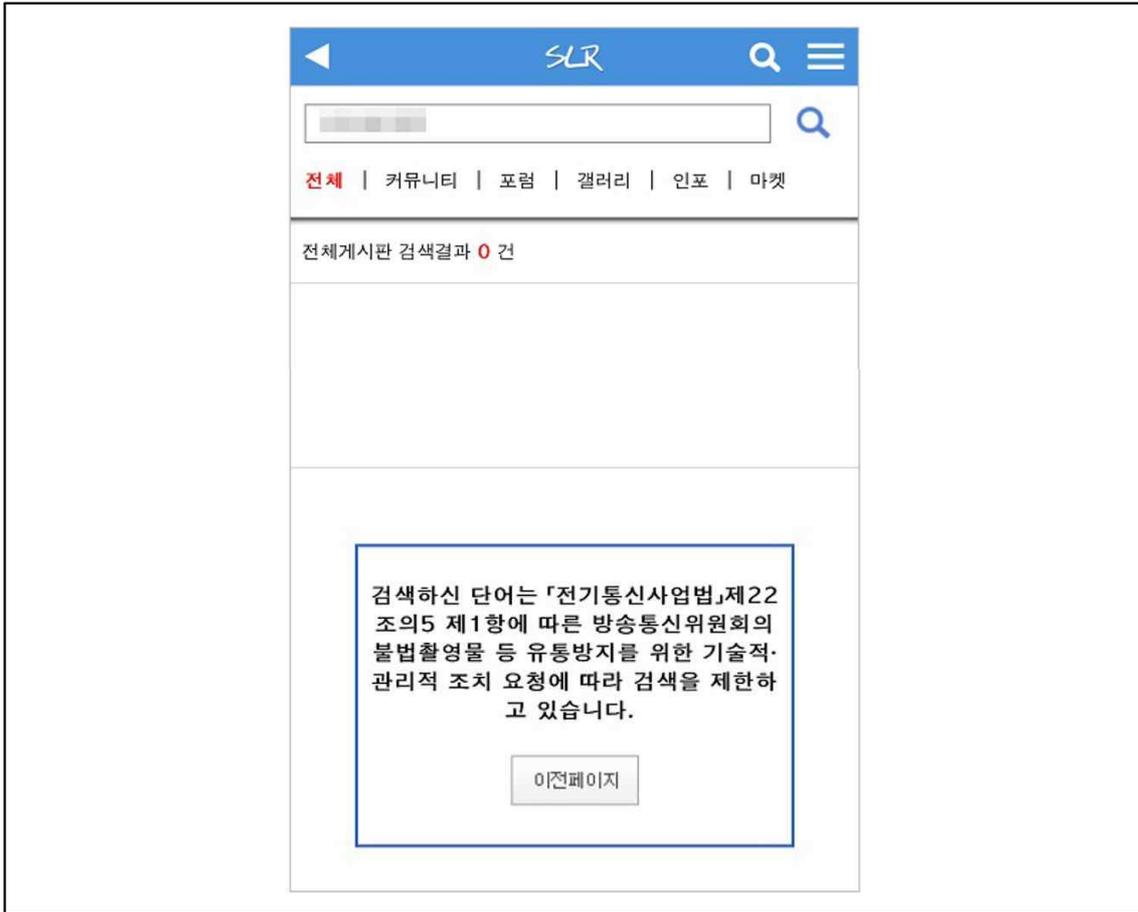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 관련 단어는 검색이 제한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LRCLU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a navigation menu with categories: COMMUNITY, FORUM, GALLERY, INFORMATION, MARKET, SLR MALL, and EVENT.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user profile section showing a level indicator and a '회원정보수정' link. A search filter dropdown is set to '전체보기'.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blue notification box titled 'SLRCLUB 알림' (SLRCLUB Notice). The notice text reads: '검색하신 단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요청에 따라 검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he word you searched is restricted because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reques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under Article 22, Paragraph 5, Item 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cording materials, etc.). Below the notice is a blue button labeled '이전페이지' (Previous Page).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footer with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C) SLRCLUB. ALL RIGHTS RESERVED.' and a list of links: '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재휴문의', '고객센터', and '이용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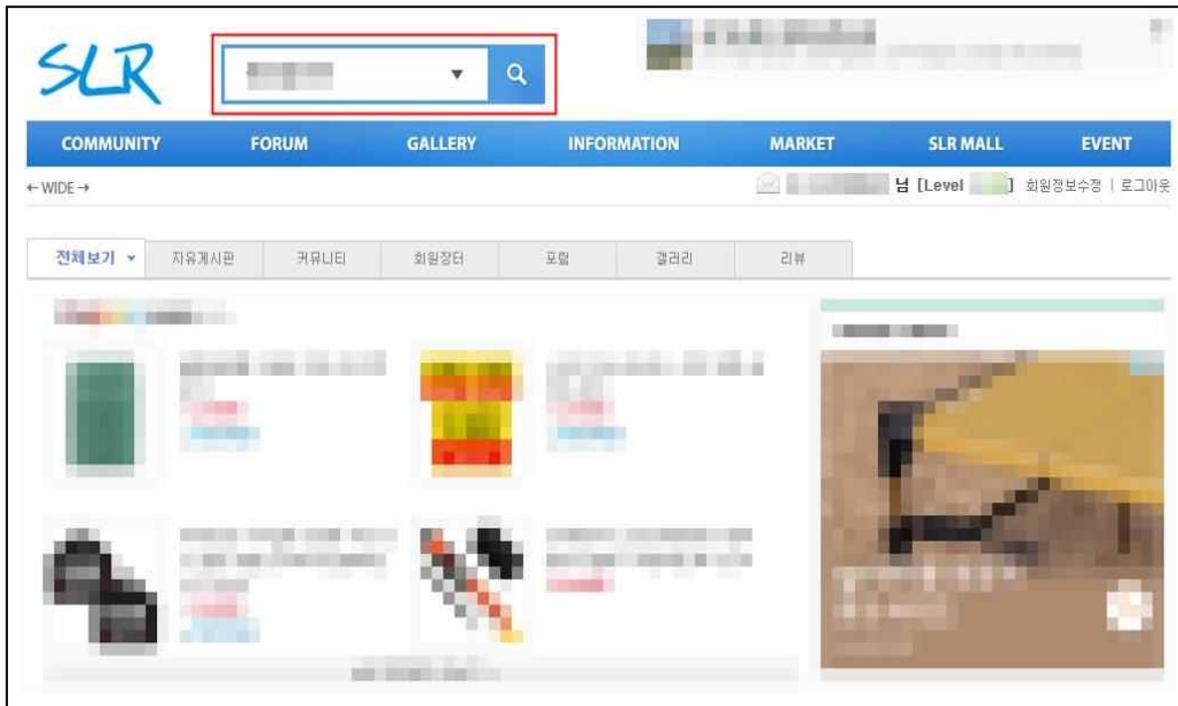
- 불법유해정보 관련 단어는 검색이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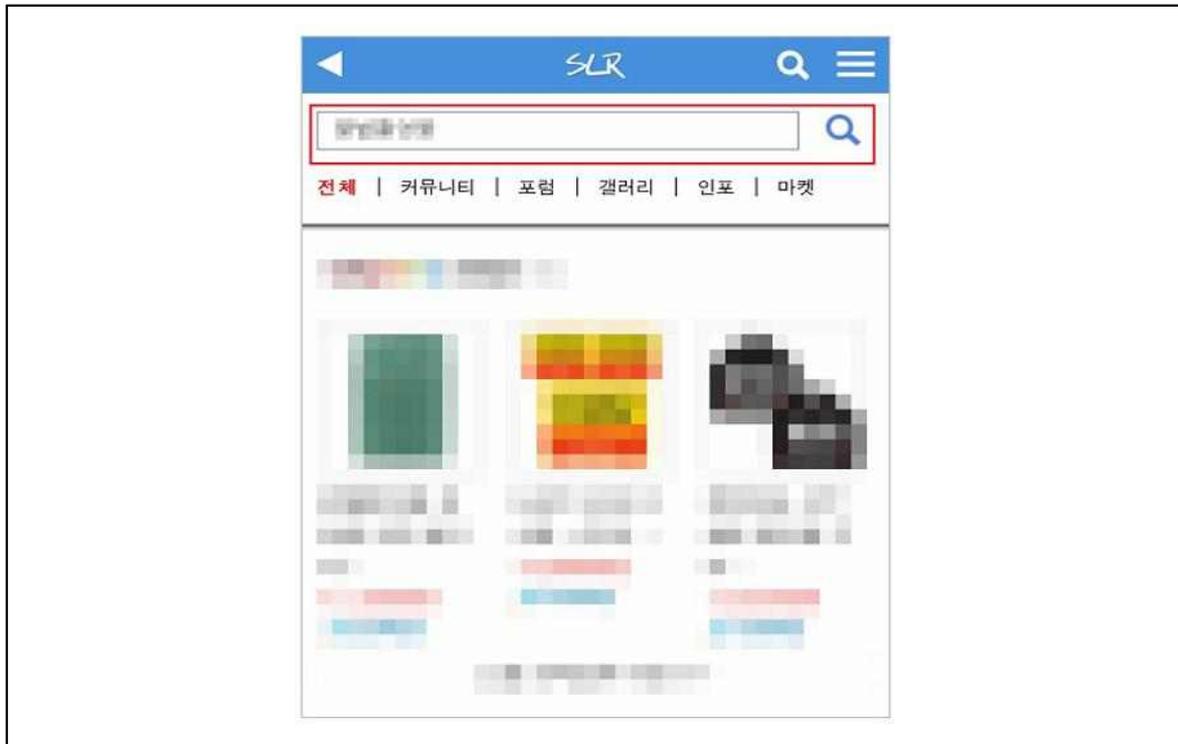
· Mobile 검색결과 송출 제한 이미지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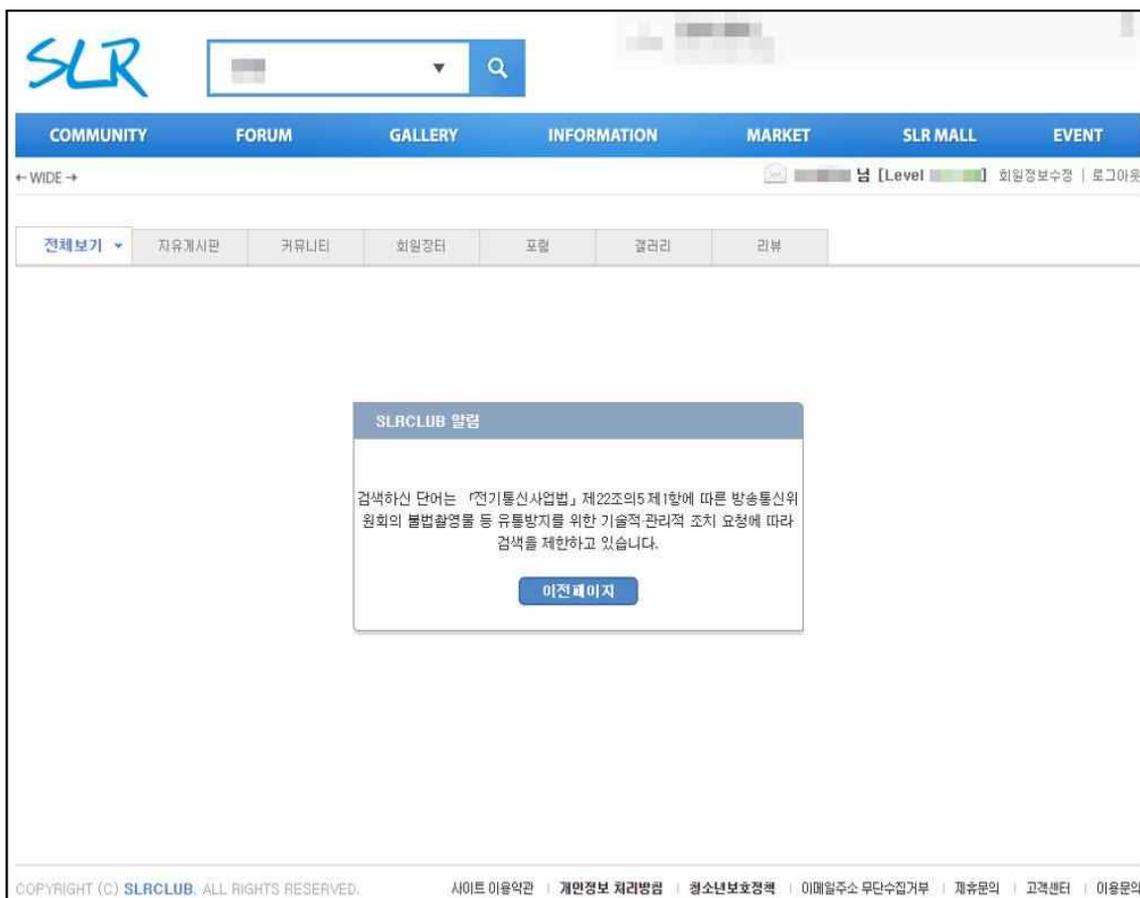
- SLR클럽은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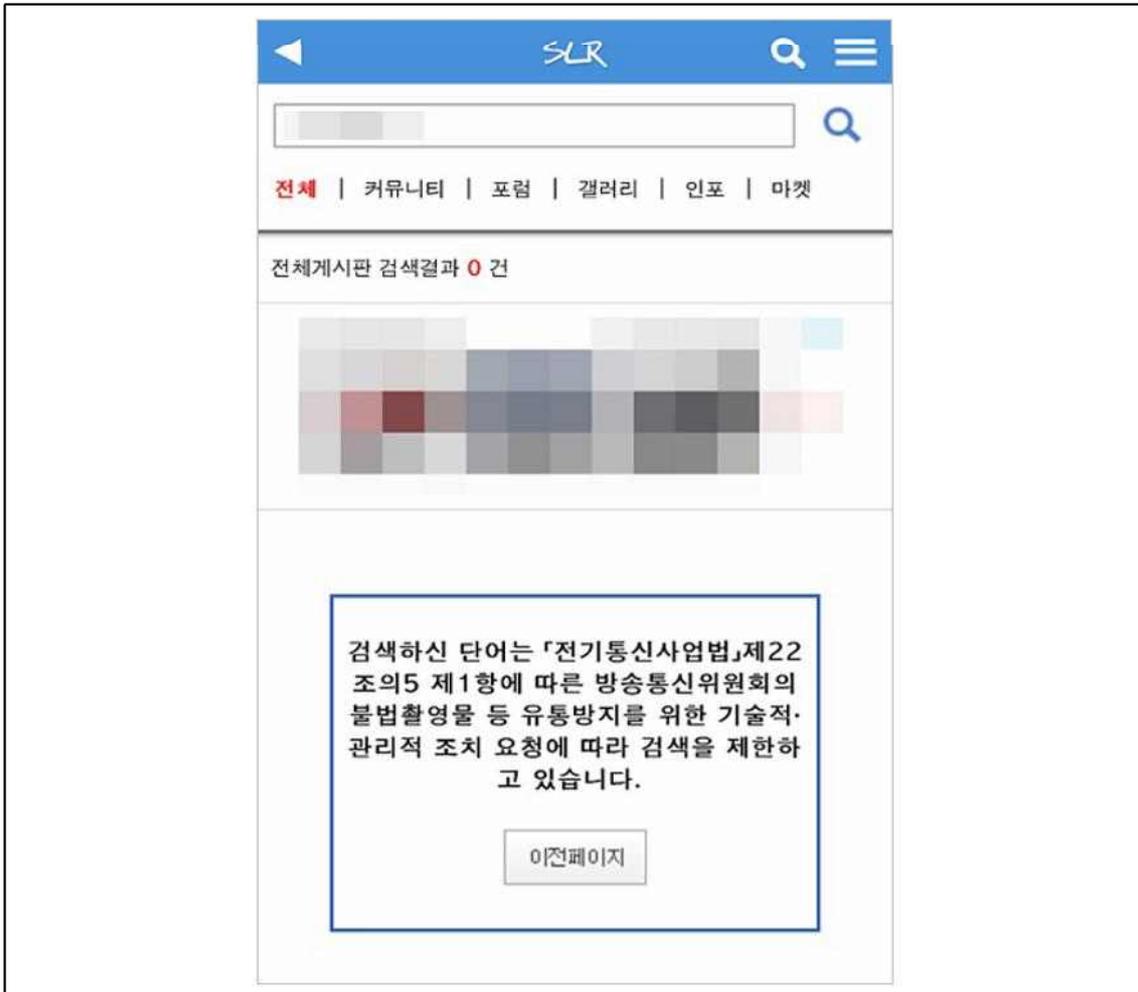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 SLR클럽은 동영상, gif 움직이는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SLR클럽	무		동영상, gif 업로드 기능 없음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게시물 작성시 사전경고 시행

· PC, Mobile

자유게시판

GUIDE 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OTICE **소니 행사 제품 구매 후 정품 등록하고 세은품 받으세요!** 인기글 POP 추천인기글 HOT

옵션 HTML사용

제목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업로드 이미지 추가 0/10개 업로드 가능, 해당 20 MB 선택삭제 새로고침 리스트 보기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검속처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LA클럽은 불법촬영물 등 위법성 게시물에 대해 무통보 삭제, 이용정지 및 관련기관 신고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작성시 유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사항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리보기 작성완료 취소하기

업로드
0/10개 업로드 가능. 개당 20 MB BETA

📁 이미지 추가

✕ 선택삭제
🔄 새로고침
☰ 리스트 보기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점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LR클럽은 불법촬영물 등 위법성 게시물에 대해 무통보 삭제, 이용정지 및 관련기관 신고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작성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사항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 완료

취소하기

· 검색기반 필터링에 포함하여야 할 로그기록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유형, 등록일자, 삭제일자, 검색제한 필터링 작동여부

○ 로그기록 보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관련 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고·삭제 요청 제반사항 및 업로드 자료 관련 사항 등의 로그기록이 3 년간 저장됩니다.

· 신고·삭제 요청처리에 포함하는 로그기록 : 신고일자, 유형 처리결과 등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조치에 대한 안내 공지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notice&no=261>

The screenshot shows the SLRclub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COMMUNITY, FORUM, GALLERY, INFORMATION, MARKET, SLR MALL, and EVENT.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user login area. A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이웃문의', '제안사항', '신고센터', '도움말', '운영노트', and '공지사항'. A 'GUIDE' section contains a notice about policy change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title: '제목 SLR클럽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Subject: SLRclub implements 'Strengthened measure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ilming materials'). The author is '작성자 SLR' and the post date is '작성일 2021/12/09 12:26:46'. The notice text reads: '안녕하세요, SLR클럽입니다. 항상 SLR클럽을 아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SLR클럽에서도 다음과 같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조치(이하 '강화조치'라 합니다)'가 시행됩니다. 본 강화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SLR클럽의 관리규정을 보완 및 강화하여 시행됩니다. SLR클럽은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위법성 게시물을 이미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규정상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들의 무분별 삭제, 주의나 경고 없는 이용금지, 로그기록 저장, 위법성 게시물에 대한 유관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본 강화조치의 시행일은 오는 12월 10일입니다. 아러 세부 내용을 참조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Below the text is a blue speech bubble icon and a link '불법촬영물이란?' with a sub-heading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 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건전성저해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elp&no=19>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elp&no=55>



SLRCLUB 특별 관리규정

관련법 등에 따라 SLRCLUB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특별 관리규정을 알려드립니다.

SLRCLUB 관리규정은 공물관리규정과 게시판별 관리규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물 관리규정은 모든 게시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정이며 각 게시판마다 별도의 관리규정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SLRCLUB 특별 관리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법에 의한 특별히 더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입니다. 특별 관리규정은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관리규정의 제정 의도 및 근거

디지털성범죄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법에 의한 특별히 더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입니다. 특별 관리규정은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관리규정 시행일

특별 관리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이 관리규정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즉각적으로 시행됩니다.

■ 특별 관리규정 간단히 알기

특별 관리규정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진, 영상 등의 여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관리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며, 삭제·이용금지/수사기관 신고 등의 관리적 조치와 더불어 로그기록 저장, 검색제한 및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 관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공지 : SLR클럽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 불법촬영물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비동의 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 비동의 유통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하위영상물) : 반복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과 편집, 합성, 가공 시에는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 없이 유통된 편집물 등
2.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목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거울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장치를 통한 화상과 영상 등

IV. 청소년 유해 매체

SLRCLUB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이나 미성년자의 열람이 자유로운 만큼, 모든 게시물은 청소년의 열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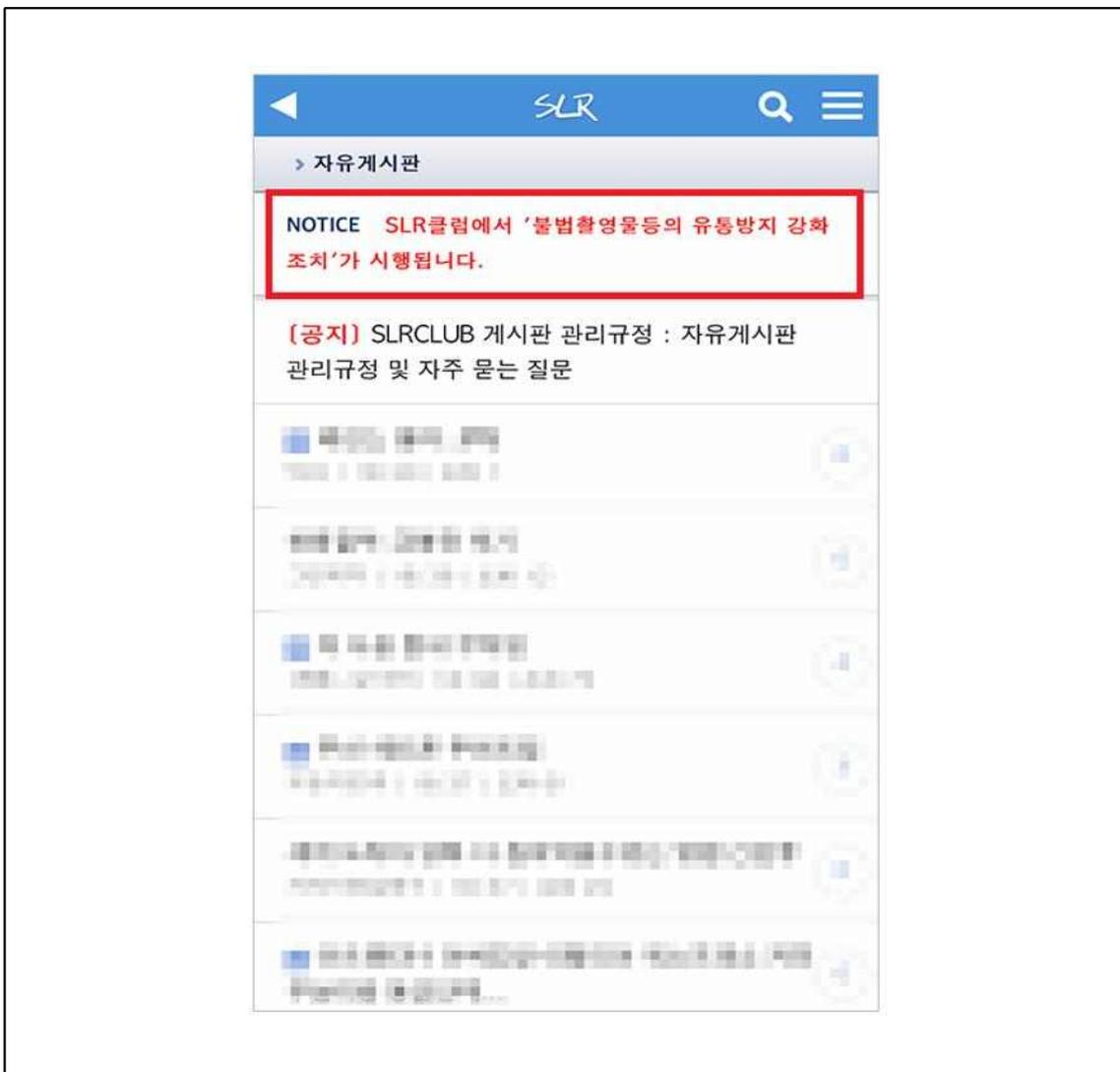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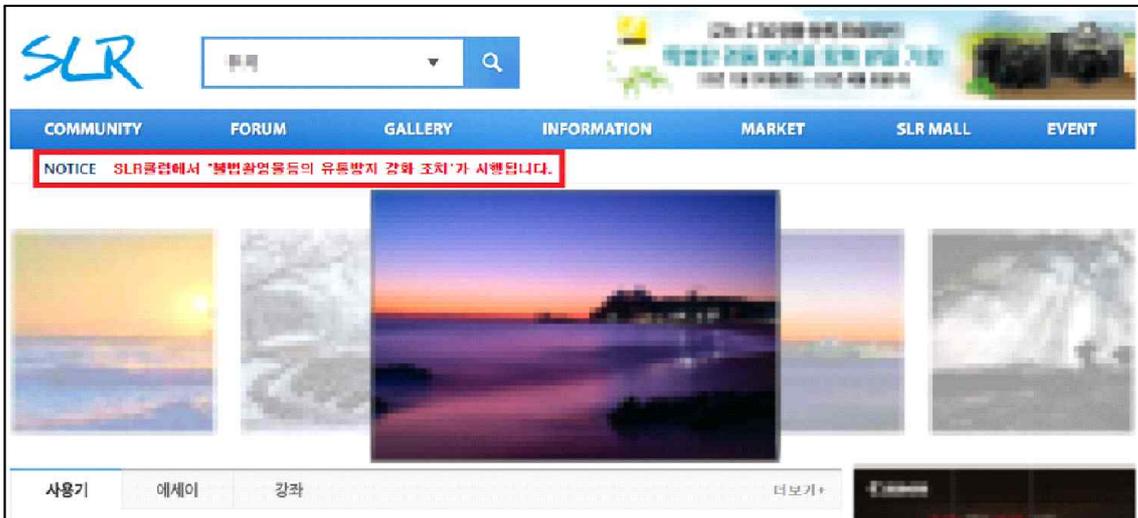
1. 건전성 저해 게시물

1. 특정한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촬영한 이미지 중 청소년이 열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성행위의 묘사
3. 건전성 저해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배포하거나 요청
4. 성폭력적 어휘, 내용 (예: 박고 싶다, 따먹으면 맛있겠다, 합 대주라 등)
5. 국내 유통이 금지 혹은 제한된 콘텐츠 등의 게시, 관련정보 공유, 전재 등
6.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게시물(성인인증 등)을 공개게시판 내 언급, 링크, 전재하는 경우

2. 불법정보

1. 성매매 정보, 후기 및 알선 등
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게시물이나 유사 게시물로 다수의 회원에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관련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법) 및 동법 17조)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가공물·합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조치에 대한 안내 공지의 시스템 전체 공지



- 게시물 작성 페이지 내 알림 및 체크박스 표시

FORUM

GALLERY

SLR MALL

EVENT

level [Progress Bar] | 회원정보수정 | 로그아웃

www.slrclub.com 내용: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관한 안내 공지를 읽고 '확인'을 체크해주세요.

확인

자유게시판

GUIDE 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OTICE SLR클럽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인기글 > POP

추천인기글 > HOT

옵션 HTML사용

제목

[CAMPAIGN]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이미지 추가 0/10개 업로드 가능. 개당 20 MB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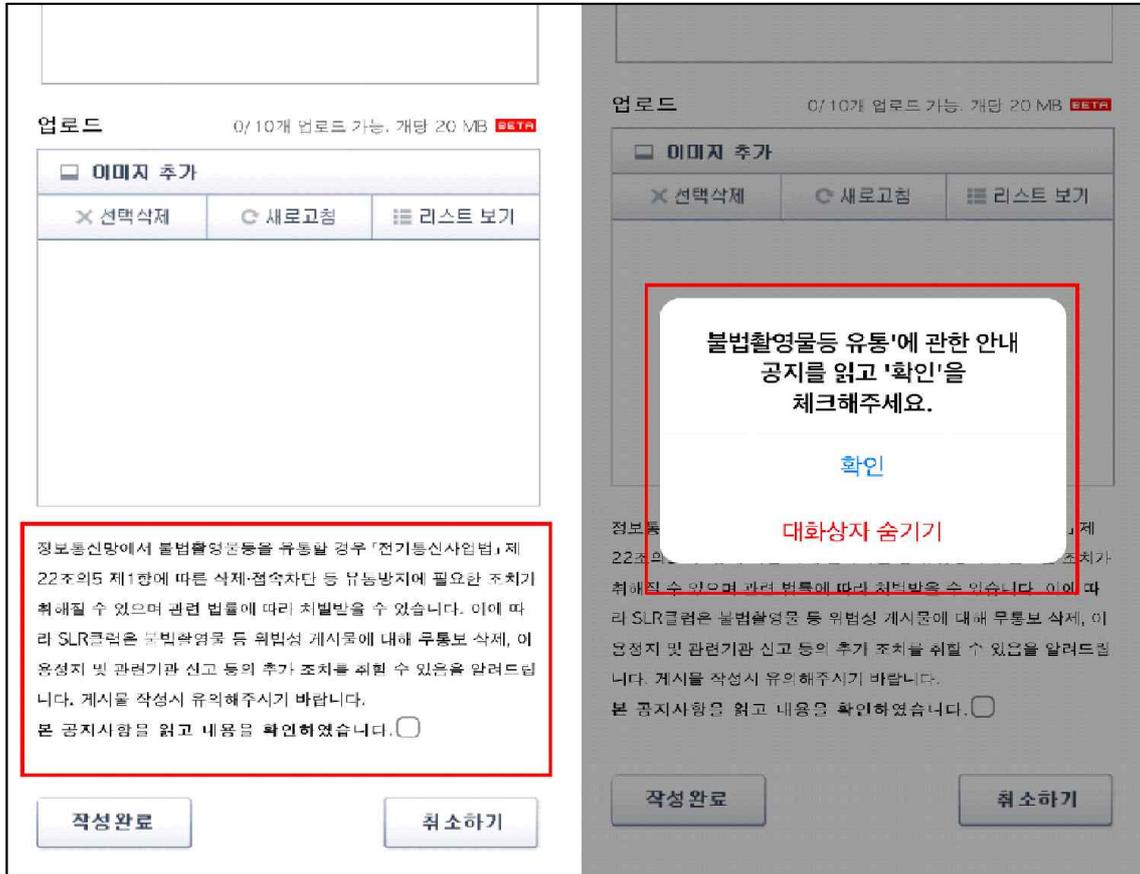
* 선택삭제 ↻ 새로고침 ☰ 리스트 보기

업로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LR클럽은 불법촬영물 등 위법성 게시물에 대해 무통보 삭제, 이윤정지 및 관련기관 신고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작성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사항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리보기
작성 완료
취소하기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조치에 대한 문의접수시 상세한 안내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2.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
		이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	-	-	-	-	-	-	-	-	-	-	-	
		각하·해당없 음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규정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help&no=55>



SLRCLUB 특별 관리규정

관련법 등에 따라 SLRCLUB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특별 관리규정을 알려드립니다.

SLRCLUB 관리규정은 공통관리규정과 게시판별 관리규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관리규정은 모든 게시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정이며 각 게시판마다 별도의 관리규정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SLRCLUB 특별 관리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법에 의해 특별히 더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입니다. 특별 관리규정은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관리규정의 제정 의도 및 근거

디지털성범죄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라, SLR클럽에서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조치(이하 '강화조치'라 합니다)'가 시행됩니다. 본 강화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SLR클럽의 관리규정을 보완 및 강화한 것입니다.

■ 특별 관리규정 시행일

특별 관리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이 관리규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시행됩니다.

■ 특별 관리규정 간단히 알기

특별 관리규정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진, 영상 등의 매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관리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며, 삭제/이용정지/수사기관 신고 등의 관리적 조치와 더불어 로그기록 저장, 검색제한 및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까지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 관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공지 : SLR클럽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 불법촬영물이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비영의 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품
- ▶ 비영의 유통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나 사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품
- ▶ 편집물, 합성물, 가합물(하위영상물) : 반복 촬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영상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영상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 합성 또는 가합된 편집물 등과 편집, 합성, 가합 시에는 영상의 구성요소만 영의 없이 유통된 편집물 등

2.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목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러한 것의 비리비리, 웹툰,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과 영상 등)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강화조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통방지 강화조치를 알려드립니다.

1. 게시물 신고

SLR클럽은 약관 및 게시물 관리규정에 따라 이미 이와 같은 불법촬영물 매체의 게시물을 금지하고 발견시 삭제 및 추가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등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 방법

- 관리요청을 통한 게시물 신고기능(회원)
- 이용문의 접수(회원)
- HELP 메일 접수(회원 및 비회원)
- 불법촬영물 신고메뉴로 접수(회원 및 비회원)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건전성저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 시 운영팀 확인 후 열람차단 조치합니다. 또한 게시자에게는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추가 조치(경고, 감점, 이용차단 등)를 진행합니다. 현재 관련 신고는 홈페이지 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페이지와 이용문의/전화문의/이메일/게시물 신고기능/기관·단체(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을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되도록 하고, 관련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서 및 처리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반대걸(책임자)	임원	대표이사	2020-12-28
부	권효진(실무자)	운영팀	매니저	2022-05-04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내부교육	2022-03-0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령 및 신고 시스템	운영팀	1시간	자체교육
내부교육	2022-09-0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바로알기	운영팀	1시간	자체교육
법정교육	2022-11-07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권효진	2시간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1-2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반대걸	2시간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1-28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운영팀	2시간	방송통신위원회

< 교육 증빙 >

➤ 2022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온라인 교육 안내 🔖 📄

22. 10. 25 오전 10:36

안녕하세요, [redacted]

우리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유통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른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대상 사업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우리 회사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 분야를 나누어 담당 매니저가 지정되어있으며, 담당 매니저 이외의 직원에게는 관련 업무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나, 본 교육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 매니저 외에도 운영팀 전원이 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에 참가하시고 수료증을 **2022년 11월 28일(월)까지 본 게시물에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2. 교육기간
~ 2022. 11. 30.

발급번호 : 2022-11-093-0003

교육 수료증

성 명 : 반대걸
소 속 : ㈜인비전커뮤니티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2. 11. 25. - 2022. 11. 25.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11. 25.

 방송통신위원회